

“사장이 누구냐” 사용자 규정 명확히 하라

■ 이재명 정부 출범후 노조법 2,3조 개정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7~8월 입법을 목표로 문구를 손질하고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 핵심은 제2항 ‘사용자’ 범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누구인지 파악조차 어려웠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산별(업종)교섭 등 초기업단위교섭을 제도화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청 교섭으로 가는 자동문은 아니다

■ 노조법 개정이 곧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도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임을 극구 부정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근거로 원청에 교섭을 요청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원청은 본인들이 ‘지배·결정하는 자’**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다시 재판장에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을 옹호하는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개정을 대비한 매뉴얼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자본이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결국 노조법 2조 개정이 권리의 확대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노사간의 힘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제일 먼저 요구안을 만들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항의방문과 출근투쟁을 하고, 교섭해태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마지못해 교섭자리에 앉습니다. 교섭권 쟁취 자체가 험난하면서도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교섭을 여는 싸움을 조직하자

■ 우리에게 유리한 법 개정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결은 투쟁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법이 바뀌고 새로운 판례들이 쌓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교섭할 권리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주체들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사용자를 찾고 규정하는 ‘조직확대’ 싸움입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여 요구안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 불참시 투쟁을 벌이는 ‘교섭권 확보’ 싸움입니다.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노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노조 충남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삼성전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조를 설립을 조직할 때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벌이는 분명한 목표를 두는 미조직 전략을 짜야 합니다.

■ 단 번에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노조가 각개격파할 수 도 없습니다. 현장의 조건과 인식, 준비정도, 요구안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원청 교섭이 성사되어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순탄하게 한 번에 좋아질 리 없습니다. 재벌그룹은 교섭을 통해 자회사노조, 하청노조를 갈라치기하며 그룹사 전체의 지배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노조를 탄압할 수도 있습니다.

총노동의 전국적 투쟁기구가 필요하다

■ 지금부터 총노동의 정책과 조직, 전략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가능한 단위부터 묶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역, 현장의 역할분담을 어떤 자리든 모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장교안 제작부터 사회여론화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계기로 계속 퇴보중인 산별교섭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과 업종, 고용형태를 망라한 전국단위 투쟁기구, 가칭 <온전한 교섭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만듭시다.

중요한 것은 ‘기획’이고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운 역사를 기억도 못한 채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법전에 머무르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만들지 맙시다. 이는 국회가 아닌 우리의 몫입니다. 📢